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기덕 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 제1849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 2. 제안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 또한,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장치 안전교육의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1항제5호)
- 다. 안전교육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4. ~ 6. 8.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sup>1)</sup>
  -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주·정차위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

1)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보행자전거과-8235, 2024.6.11.)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시장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근절사항 등을 안전교육 내용 등에 포함시키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3조제5항 신설)

- 안 제3조제5항<sup>2)</sup>은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 제32조 등에 따라 주·정차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21년 관련 법 개정<sup>3)</sup>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처벌근거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에서 파악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sup>4)</sup>를 살펴보면 '18년 150대에서 '23년 41,44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법률 제17891호, 시행 2021.5.1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제43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80조제1항·제3항 등 신설, 제82조제2항제1호 등 신설)

구 분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2020.12.10.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면 허	면허필요	면허 불요	면허 필요 (원동기면허 이상)
이용연령	만 16세 ↑	만 13세 ↑	만 16세 ↑
통행방법	차도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불가)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	의무 有, 벌금 無	2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20만원 이하 범칙금	의무 有, 벌금 無	20만원 이하 범칙금
승차정원 초과	-	無	20만원 이하 범칙금

4) 서울시 권역 공유 PM 운영 규모(2023.12월 기준)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 PM업체: (2018년) 1개 업체 150대 → (2023년) 5개 업체, 41,440대

되었고 특히 안전사고<sup>5)</sup>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제도나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보여짐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수립 사항 및 안전교육 관련 (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6호 신설)

- 안 제4조제1항제5호<sup>6)</sup>와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과 안전교육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 서울시 공유 PM 및 자전거 사고 건수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	PM	1,422	50	134	387	445	406
	자전거	8,492	1,471	1,766	1,802	1,779	1,674
사망자수	PM	8	-	1	1	1	5
	자전거	64	18	11	14	13	8
부상자수	PM	1,553	56	139	420	489	449
	자전거	9,371	1,573	1,950	2,018	1,969	1,861

※ 서울시 권역내 개인소유 및 공유 PM과 자전거를 포함한 건수(출처: 경찰청)

6)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4조(사업추진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의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2019년 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7)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규정을 마련하여 '21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sup>8)</sup>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sup>9)</sup>’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공유 PM 주차구역 신설 및 PM 안전교육<sup>10)</sup>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시행)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별표)
  - 견인료: 40,000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

8) 서울시 주·정차 위반 PM 견인제도 운영(2021.7.~)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견인대상: 서울시 각 자치구 내 주·정차 위반 공유 PM(즉시 견인구역 / 일반견인구역 구분)
- 견인주체: 25개 자치구별 협약된 23개 견인대행 업체
- 견인시간/비용: 평일 07시~20시 /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신고방법: 모바일 웹사이트(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신고

9) '24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보행자전거과-4495호(2024.3.26.))

<주요 추진계획>

- 1) 공유 PM 주·정차 위반 견인제도 강화    2) 공유 PM·자전거 법률 제·개정 대응
  - 3) 공유 PM 주차구역 조성 및 관리        4) 공유 PM 대여업체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 5) PM·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 조성        6) 공유 PM·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개선
- 10) '24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보행자전거과-1792호, 2024.3.25.)

- 추진기간: 2024.3월~12월
- 추진방법: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기관 자체운영
- 교육장소: 교통안전체험장, 한강공원, 학교시설 교육장 등/ 교육대상: 서울시민
- 교육내용: 자전거·PM 교통 안전교육전반(운전자 통행방법, 안전사고 사례, 주정차 기초질서 등)
- 2024년 교육목표: 56,000명 (2023년 추진성과: 56,568명, 목표인원 30,415명 대비 186% 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 민원신고 접수 건수<sup>11)</sup>는 '23년도 기준 140,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8%가 증가되었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도에 발생한 공유 PM 사고 406건 중 무면허 105건, 음주 51건 으로 나타났고, 이 중 안전모 착용률은 2.9%에 불과하여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미준수<sup>12)</sup>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 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1) 공유 PM 신고시스템상 주·정차 위반신고건수

- 2022년 96,181건 → 2023년 140,926건(전년대비 약 31.8% 증가)

12) 2022년 사고 406건 중 무면허 105건, 음주 51건, 안전모 착용률 2.9% (서울시 내부자료)